

국민참여재판의 선택과 기피: 수용자 조사

심진섭 이다니 박광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형사재판이 참여재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범운영과정부터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논의점은 형사피고인들의 낮은 신청률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과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형사피고인이었던 수용자 142명을 대상으로 참여재판의 선택과 기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이 본인에게 실익이 없고, 배심원들이 감정적 판단을 할 것이며, 판사, 검사,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국민참여, 민주성, 투명성, 형사피고인, 신청률, 수용자, 배심재판에 대한 태도

[†] 교신저자 : 박광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28644) 충북대학교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Tel : 043-261-2195, E-mail : kwangbai@chungbuk.ac.kr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사법에도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이 발전하여(심희기, 1990),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1999년 배심제, 참심제 등의 국민의 사법참여방법을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보고하였으며, 이후 대법원도 2000년 “21세기 사법 발전을 위한 종합적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에 관한 연구검토를 주요내용에 포함시켰다(법원행정처, 2007). 2003년 참여정부 대법원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2004년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신동운, 2006).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005년 5월 법조삼자를 포함하여 사회 각 부분의 위원들이 합의에 의한 입법안을 의결하였으며, 제1단계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으로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모델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약 5년간 시범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헌법상 문제를 해명하면서 한국에 적합한 최종적인 모델을 성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동희, 2015).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대상사건의 범위(법 제5조), 국민참여재판 적용 시 피고인의 사존중(법 제8조), 국민참여재판의 배제(법 제9조),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의 수(법 제13조 및 제14조), 배심원 선정절차(법 제22조 내지 제31조), 공판준비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6월 1일에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단계로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법이 개정되어 현재 제2단계 운영을 하고 있다(한상훈, 2008).

국민참여재판 실시와 관련하여 많은 법학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상훈(2008)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6개월 차에 국민참여재판 접수 현황, 배심원관련 등을 포함하는 국민참여재판 6개월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민참여재판의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관련하여 실제 국민참여재판 신청건수가 상반기 총 114건이었으며 판결의 선고에 이른 건은 23건(20.2%)이고, 철수한 건수는 37건(32.4%)이며, 배제한 건수는 30건(26.3%)이고, 미제 건수는 24건(21.1%)이었다. 한상훈(2008)은 미제사건을 제외하고 종결된 90건 중 37건이 철회(41.1%)라는 사실을 들면서 피고인들의 철회사유의 검토를 제안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의 기간이나, 신청주의 재검토를 논의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대상사건의 규정과 관련한 법률 제5조 1항1)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첫째,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초기에 인적, 물적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연 100~200건 정도 수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기로 예정하였지만, 현재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제정(법률 제8495호. 2007. 6. 1. 제정, 2008. 1. 1. 시행)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법 제5조)에 대하여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하되, 합의부 관할 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도 적용대상으로 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는 그러한 여건이 어느 정도 구비되었다. 둘째, 대상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조작, 증거법칙 등에 대하여 배심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데, 중요범죄를 중심으로 구성요건, 정당방위, 알리바이, 심신장애, 증거법칙 등 여러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법관의 설명 문안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 한상훈(2008)에 따르면 시행초기의 불확실성, 지나친 조심스러움 등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예상보다 많지 않으므로 대상범죄를 초기에 확대하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미숙(2010)도 대상사건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박미숙(2010)은 국민참여재판의 낮은 실시건수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이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를 제도를 실현하는 판검사와 변호사의 인식부족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병수와 민영성(2011)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의 고질병인 전관예우가 통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며, 투명하게 형사재판을 공개함으로써 사법의 폐쇄성과 관료화로 인한 사법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가 요청되므로 재판에서 논쟁과 입증과정이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그대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사법의 투명성 확보나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다는 점,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볼 때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사법에서 시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재판기관의 구성에 있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방해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시행 1년의 경과에서 주목한 것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전에 우려했던 공정성, 사건 및 법률에 관한 배심원의 이해도와 같은 배심원의 문제보다는,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여,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일반재판인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결과를 나타낸 것과, 2008년 6월까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1,275건 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8.9%인 114건이었고,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난 사건은 55%인 23건에 불과하여 낮은 신청률과 높은 철회·배제율이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피고인의 낮은 신청률을 꼽았다. 신청이 낮은 원인으로는 ‘참여법률 제8조에서는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지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표시를 위한 숙고기간으로 짧아서 시기를 놓쳐 신청을 못하는 경우’(김병수, 민영성, 2011, 김태규, 2008), 국민참여재판을 지방법원 지원에서 받을 수 없어(참여법률 제10조 제1항)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되는 불이익이 두렵고,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준비기일부터 공판기일까지 약 4주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일반재판보다 공판기일이 늦어지면 전체 재판도 늦어질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김병수, 민영성, 2011, 한상훈, 2008) 신청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한 피고인의 부정적 인식이 주요원인 중 하나(김병수, 민영성, 2011)이고, 시행 3년 동안 대상사건 19,431건 중 5.2%인 1,006건이 신

청되었으며, 그 중 404건이 철회되어 40.1%의 높은 철회율을 보였고, 1,006건 중 21.0% 해당하는 211건이 배제 결정된 것에 대하여 법원의 지나친 간섭도 낮은 신청률의 한 요인이다(김병수, 민영성, 2011, 한성훈, 2014). 또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율이 86.6%로, 일반공판의 항소율 66.9%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피고인의 항소율(쌍방 항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계산)은 66.4%이고, 일반재판에서의 항소율 59.8%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특히 검사의 항소율은(쌍방 항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계산) 일반 재판에서는 19.6%에 불과하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53.6%에 이르고 있어 검찰의 높은 항소율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또 다른 방해 원인으로 지적하였다(김병수, 민영성, 2011, 한성훈 2014).

한성훈(2012)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국민참여재판 자료와 대법원 사법지원실에서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시행한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배제율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과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과 양형절차에 관한 것으로 지적한다(한성훈, 2012). 김범식(2014)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시행 성과로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개선된 사항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증진의 조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증진, 배심원 결정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들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동안의 자료를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 문제, 부실재판의 문제, 평결의 엄격성

과 취약성문제, 높은 항소율 등을 들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시범운영기간이었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의 경과를 중심으로 김호겸, 박광섭(2013)은 국민참여재판은 그 신청률이 대상건수에 비해 상당히 낮고, 이마저도 높은 배제율과 철회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한성훈(2014)도 국민참여재판의 시범운영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낮은 신청률과 높은 철회·배제율,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서(강제주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통상재판을 받도록 하는 방안(“Opt-out” 방안)으로 지금의 신청주의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이 시간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거나 사실을 알고 있지만 피고인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시간으로 짧을 수 있다(김태규, 2008).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경우 공판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검사도 직접법정에 나와야 하는 등 업무가 일반재판에 비해 늘어나 검사가 자신을 곱게 보지 않을 것 같고, 나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피고인의 판단도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금옥, 2008).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일반인들(배심원)에게 자기 잘못이 알려지고, 여론이 관심을 갖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한성훈, 2014).

이동희(2015)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시행 6년간,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면 낮은 신청률·실시율 및 높은 철회율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원인으로서는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점을 꼽았으나(이인석, 2010)²⁾ 실시율은 상승했기에 국민참여재판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보고 있었다. 철회율과 관련하여서는 법조관계자들의 소극적 태도를 원인으로 보고 있었으며, 검사의 경우 통상의 재판에 비하여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입증준비나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월등히 많은 업무량과 노력이 요구되며, 변호사의 경우에도 종래의 변호행태에 익숙한 입장에서 통상의 재판보다 어렵고 많은 업무임에도 특별히 고액의 선임비용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나 설사 노력하여 무죄를 평결을 받더라도 기속력이 없어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피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2009년 5월 피고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신청 피고인 중 8.4%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고, 12.6%는 신청하면 수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법조관계자의 소극적 태도 문제를 지적하였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 중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4분의 3이상의 가중다수결제로 평결하고, 헌법, 법령 등의

위반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최종 형태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이동희, 2015).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기존의 논문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2008년 6월까지 전체대상사건은 1,275건이었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114건(8.9%)이었다. 이후 2008년, 2009년 2년 동안 대상사건은 11,498건 중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136건(4.9%)이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대상사건은 19,431건이었으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1,006건(5.2%)이었고(김병수, 민영성 2011),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행 5년 동안 전체대상사건은 41,691건 중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2,232건(5.4%)이었고(점승헌, 2014),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 6년 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수는 61,622건이었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2979건(4.8%)이었으며(이동희, 2015), 전체 대상사건에 비하여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또한 실제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와 재판 건수를 살펴보면, 시범기간 동안 접수 건수는 2008년 226건, 2009년 297건, 2010년 437건, 2011년 484건, 2012년 74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도 76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608건으로 다소 주춤하는 추세이다. 재판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60건, 2009년 94건, 2010년 162건, 2011년 253건, 2012년 274건, 2013년도 34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271건으로 다소 주춤하는 추세이다(그림 1).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국민참여재판에

2) 법원행정처에서 2009년 5월 피고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피고인중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 어느 정도 알지만 자세히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에 달했다. 한편, 모른다고 응답한 피고인 중 알았으면 신청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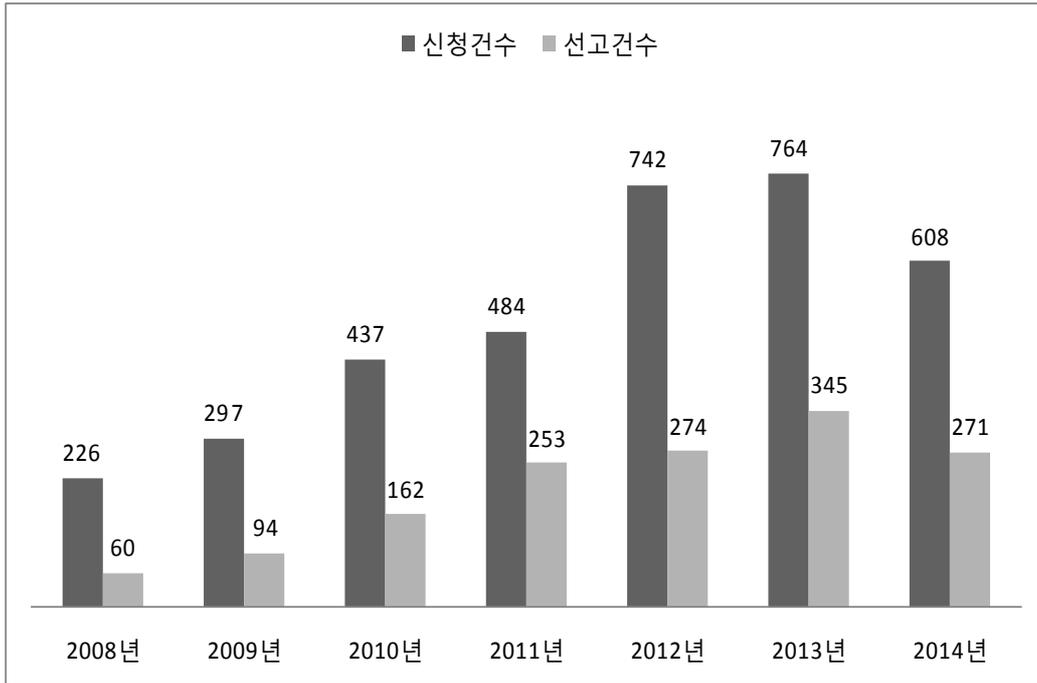


그림 1. 2008~2014 국민참여재판 현황.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통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2012.7.1.일자로 형사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신청건수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2008년부터 2014년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중 신청건수이며, 선고건수는 신청건수에서 실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에 이루어진 것이다.

대한 문제점들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꾸준히 논의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낮은 신청률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행 법상 대상사건의 피고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될 수 없다.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법학자들은 낮은 신청률의 원인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부족, 국민참여재판이 실익이 없다는 것,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검사나 변호사의 소극적 태도, 검사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것 같은 염려,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한 검사의 높은 항소율, 국민참여재판 개시방식이 신청주의인 것,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부담, 배심원의 평결문제를 꼽

는다(김병수, 민영성, 2011, 김용호, 2014, 김창렬, 2014). 법학자들이 제시한 요인들이 실제 피고인들이 신청하는데 저해가 되는 요인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었던 피고인들을 조사하여 선행연구에서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 지목된 사항과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가설 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신뢰도)이 부정적이다.

가설 3. 피고인이 재판관여자(판사, 검사,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기혼이 61명(43.3%)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미혼 48명(34%), 이혼 32명(22.7%)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A교도소(70명)와 B교도소(73명)의 수용자 중에서 표집되었다. A교도소와 B교도소는 각각 경비등급⁵⁾이 완화경비처우급과 일반경비처우급 교도소였다. 교정기간에 수용된 참가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았다.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였고,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시간을 이용하거나, 사동에서 개인적으로 조사하였고,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참가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었던 수용자³⁾ 143명이 참여하였다. 2008년 이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 합의부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141명(98.6%)과 2015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었던 단독부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2명(1.4%)이었다⁴⁾.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42.17세(SD=11.62)였다. 10대는 5명, 20대는 19명, 30대는 29명, 40대는 48명, 50대는 32명, 60대는 6명이었다. 참가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상 98명(70%)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혼인여부는

측정도구 및 연구절차

앞서 개관된 선행 법학논문들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 추정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조사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설문문에 포함된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과 국민참여재판 관련 사항으로 구분하였다. 기본사항에 포함된 내용은 인적사항, 범죄관련, 재판관련 문항이었고, 국민참여재판 관련에 포함된 내용은 자기사건에 대한 인식,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재판 관여자에 대한 인식이었다(표 1).

3) “수용자”란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의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시행2016.12.2. 법률 제14281호).
4) 법원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단독판사 관할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1항, 시행 2015. 7. 1. 대법원규칙 제2602호).

5) 교정시설은 도주방지 등을 위한 수용설비 및 계호의 정도에 따라 개방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경비 시설로 구분한다. 완화경비시설은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한 관리·감시를 일반경비시설보다 완화한 교정시설이며, 일반경비시설은 도주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 및 수형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관리·감시를 하는 교정시설이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7조 2항).

표 1. 설문내용

구분	범주	문항내용
기본사항	인적사항	나이, 성별, 학력, 결혼상태 등
	범죄관련	죄명, 범수
	재판관련	재판년도, 1심 합의부 유무
국민참여재판 인식	자기사건에 대한 인식	재판 당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지 (알고 있었나?) 본인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여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범죄인정 여부, 변호사 선임 여부, 항소 여부, 형량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혹은 신청한 이유, 철회된 이유, 배제된 이유에 대한 인식 자기 사건에 대한 이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어떻게 생각하나?) 배심원의 판결능력에 대한 신뢰 만약 다시 재판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것인지 신청기간에 대한 생각 재판소요 시간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무죄주장/유죄인정하 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인지에 대한 인식
	재판 관여자에 대한 인식	판사 검사 변호사

결 과

기본사항

참가자들의 범죄유형 분포는 성범죄 27명 (19.7%), 살인 21명(15.3%), 폭행 10명(7.3%), 혼합 7명(5.1%), 치사 7명(5.1%)이었고, 기타범죄 54명(39.4%)이었다. 참가자의 평균수용횟수는 2.17회(SD=1.81)였으며, 초범 83명(59.7%), 누범이 56명(40.3%)이었고, 재판시기는 2015년 58명(32.2%), 2014년 46명(32.2%), 2013년 이전 39명(27.2%)이었다. 응답자 143명 중 1명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에 응답하지 않았다. 국민

참여재판 대상자 142명 중, 국민참여재판 미신청자는 90.8%인 129명이었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자는 9.2%인 13명(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람은 5.6%인 8명 이었고, 신청 후 철회한 사람은 2.1%인 3명, 신청 후 배제된 사람은 1.5%인 2명)이었다.

수용자들의 범죄유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는 다르지 않았다($\chi^2=7.96, df=6, p>.05$).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며 표 2에 범죄유형별 신청율과 카이제곱검증 결과를 제시 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수용자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에서 연령의 효과

표 2. 범죄유형별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

		범죄명							χ^2	P
		살인	성범죄	강도	폭행	기타	혼합	치사		
신청	신청	15	26	10	9	51	6	6	7.96	.24
	안함	(75)	(96.3)	(90.9)	(90)	(94.4)	(85.7)	(85.7)		
여부	신청	5	1	1	1	3	1	1		
	함	(25)	(3.7)	(9.1)	(10)	(5.6)	(14.3)	(14.3)		

주. 단위: 명(%)

는 관찰되지 않았다($Wald \chi^2=0.43, p>.05$).

자기사건에 대한 인식

재판 당시 국민참여재판의 인지 정도는 “전혀 몰랐다”가 20명(14.2%), “잘 몰랐다”가 35명(24.8%), “조금 알았다”, 67명(47.5%), “잘 알고 있었다”, 19명(13.5%)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은, “대상이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91명(64.1%), 대상이었는지 “몰랐다”는 경우는 38명(26.8%), “대상이 아니었다”는 경우는 13명(9.2%)으로 나타났다. 즉, 142명 중 51명(36%)은 자신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참가자들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을 교차하여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127명 중, “전혀 몰랐다”, 16명(12.6%), “잘 몰랐다”, 33명(25.2%), “조금 알았다”, 50명(47.2%), “잘 알고 있었다”, 19명(15.0%)였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사람 13명 중 “전혀 몰랐다”, 4명(30.8%), “잘 몰랐다”, 3명(23.1%), “조금 알았다”, 6명(46.1%), “잘 알고 있었다”, 0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람과 신청

하지 않은 사람 모두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조금 알았다”의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람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큰 비율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전혀 몰랐다”로,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알지 못한 채 신청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현재의 인지와 관련해서는 143명 중 76%인 108명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알고 있고(“조금 알고 있다”, 81명, 56.6%, “잘 알고 있다”, 27명, 18.9%), 24.5%인 35명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모르는 것으로 (“전혀 모른다”, 10명, 7%, “잘 모른다”, 25명, 17.5%) 나타났다. 재판 당시보다 현재 시점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1/4의 수용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모른다고 느끼고 있었다(그림 2).

재판 당시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지는 수용된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며($\chi^2=22.39, df=24, p>.05$), 설문에 응답하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지 또한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chi^2=19.92, df=24, p>.05$). 수용자들의 범죄유형별 재판 당시와 현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지를 표 3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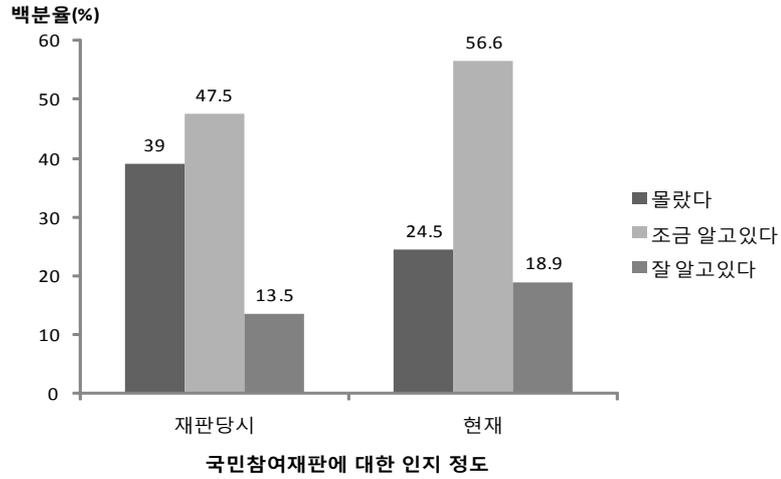


그림 2. 재판 시작 당시와 현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지 정도

표 3. 범죄유형별 재판당시와 현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지정도

		범죄유형						
		살인	성범죄	강도	폭행	기타	혼합	치사
재판 당시	몰랐다	10 (50)	10 (37)	5 (45.5)	3 (30)	20 (37)	0 (0)	4 (57.1)
	조금 알고 있었다	7 (35)	13 (48.1)	5 (45.5)	7 (70)	24 (44.4)	6 (85.7)	3 (42.9)
	잘 알고 있었다	3 (15)	4 (14.8)	1 (9.1)		10 (18.5)	1 (14.3)	
	모른다	6 (28.6)	6 (22.2)	2 (18.2)	2 (20)	14 (25.9)	0 (0)	3 (42.9)
현재	조금 알고 있다	11 (52.4)	17 (63)	7 (63.6)	7 (70)	26 (48.1)	5 (71.4)	4 (57.1)
	잘 알고 있다	4 (19)	4 (14.8)	2 (18.2)	1 (10)	14 (25.9)	2 (28.6)	

주. 단위: 명(%)

제시하였다.

재판 당시 범죄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보면, 142명 중 무죄주장,

9명(6.3%), 부분인정, 59명(41.5%), 전부인정, 74명(52.1%)이었다.

항소와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125명 중 검사나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경우는 10명(8%), 검사만 항소한 경우는 6명(4.8%), 본인이 항소한 경우는 68명(54.4%), 검사와 피고인 둘 다 항소한 경우는 41명(32.8%)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13명의 경우는, 피고인이 항소한 것은 6명으로 46.2%, 검사와 피고인 둘 다 항소한 경우는 6명으로 46.2%, 검사만 항소한 경우는 1명으로 1%였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8명 중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는 4명(50%), 검사와 피고인 둘 다 항소한 경우는 4명(50%)이었다.

변호사 선임여부에 관하여 138명 중 사선변호인 1인을 선임한 경우가 59명(42.8%), 국선변호인 1인을 선임한 경우는 57명(41.3%), 사선변호사 2인 이상을 선임한 경우는 17명(12.3%), 국선변호사 2인 이상을 선임한 경우는 5명(3.6%)으로 나타났다.

누구에게 재판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의 질문에 응답한 127명 중 판사재판이 더 유리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8명(42.7%), 판사재판이나 국민참여재판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51명(38.9%),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24명(18.3%)이었다.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보다는 판사재판이 더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은 형량에도 관여되어 있어 판사재판과 국민

참여재판 중 어느 재판에서 형량이 무거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응답한 134명 중 판사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울 것 같다는 의견이 50명(37.3%), 판사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이 형량이 비슷할 것 같다는 의견이 50명(37.3%), 국민참여재판이 더 무거울 것 같다는 의견이 34명(25.4%)으로 나타났다. 형량에 있어서 판사재판이 더 무겁거나, 아니면 판사재판이나 국민참여재판이 형량이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실제 무죄주장 여부와 국민참여재판 신청과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 무죄주장한 9명 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람은 2명으로 22.2%였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7명으로 77.8%였다. 그러나 부분인정 한 58명 중 49명인 84.5%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고, 9명인 15.5%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전부 인정한 경우 74명 중 단 2명인 2.7%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고, 대다수인 72명인 97.3%는 신청하지 않았다. 죄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보다는 판사재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람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각각 어떤 재판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118명의 경우, 판사재판, 54명(45.8%), 비슷함, 49명(41.5%), 국민참여재판, 15명(12.7%) 순이었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람 12명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9명(75.0%), 판사재판, 2명(16.7%), 비슷함, 1명(8.3%)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 중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와 형량에 대한 생각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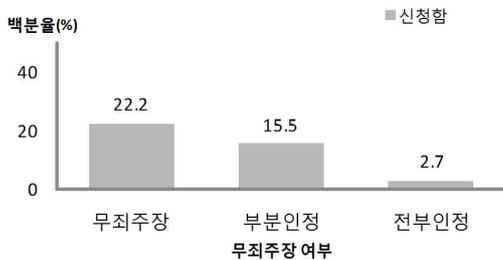


그림 3. 무죄주장 여부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신청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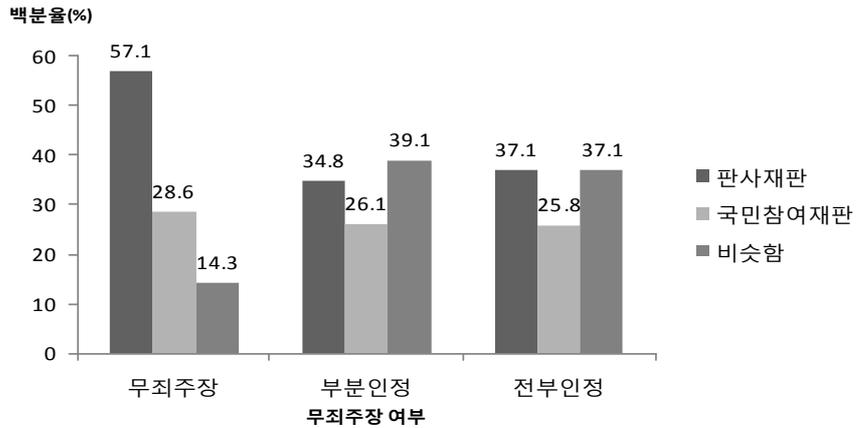


그림 4. 범죄인정 범주 내에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형태

지 않은 사람 121명의 경우, 판사재판이나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비슷할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50명(41.3%), 판사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운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43명(35.5%),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운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28명(23.1%) 순이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12명의 경우는 판사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운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6명(50%),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운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6명(50%)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범죄인정 여부와 형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무죄주장한 사람의 경우는 판사재판이 형량이 더 무거운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4명(57.1%),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운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2명(28.6%), 판사재판이나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비슷할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1명(14.6%) 순이었으며, 부분 인정의 경우는 판사재판이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명(38.6%),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1명(36.8%),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4명(24.6%) 순이었고, 전부 인정의 경우는 판사재판이나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비슷

할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27명(39.1%), 판사재판이 형량이 더 무거운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24명(34.8%), 국민참여재판이 형량이 더 무거운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18명(26.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가장 높은 선택 비율을 보인 것은 129명 중 32명(24.8%)이 배심원들이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은 129명 중 29명(22.5%)이 선택한 “주위의 만류”였다. 129명 중 23명(17.8%)이 선택한 이유는 “내게 불리한 면이 있다”, “판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었다. 129명 중 32명(24.8%)이 기타이유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몰라서”(18명)이었고, 배심원 판단의 기속력에 대한 문제, 항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⁶⁾

6) 기타의견(총 32명): 국민참여재판 몰라서 18명(56.25%), 범죄를 전부 인정했거나 필요성을 못 느낀 경우 7명(21.87%), 국민참여재판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배심원에 대한 의구심 4명(12.5%), 변호사의견으로 인하여 2명(6.25%), 배심원이 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135명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사람이 51명(37.8%), 특별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 51명(37.8%), 부정적인 사람이 33명(24.4%)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백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에 대한 생각에서 132명 중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7명(43.2%), 판사재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5명(26.5%), 국민참여재판과 판사재판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0명(30.3%)이었다. 전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결백한 피고인에게는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은 수용된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chi^2 = 9.13, df=12, p>.05$).

배심원 관련하여 배심원들이 법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134명 중 “그렇다”, 63명(47%), “아니다”, 71명(53%)으로 나타났다. 배심원들보다 판사들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하여 131명 중 “그렇다”, 48명(36.6%), “아니다”, 83명(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들이 법보다 감정을 우선시 여긴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134명 중 “그렇다”, 86명(64.2%), “아니다”, 48명(35.8%)으로 나타났다. 배심원들은 검사 측이나 피고인 측 어느 쪽에 더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130명 중 “검사 측에 우호적”, 54명(41.5%), “중립”, 54명(41.5%), “피고인 측에 우호적”, 22명(16.9%)이었다. 검사 측에 우호적이

원 무죄주장해도 판사마음대로 결정 할 것 같아서 1명(3.13%)이었다.

표 4. 범죄 유형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귀하는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별 인식이 없음
살인	6(30)	8(40)	6(30)
성범죄	7(25.9)	8(29.6)	12(44.4)
강도	4(44.4)	1(11.1)	4(44.4)
폭행	6(60)	0(0)	4(40)
기타	19(38.8)	12(24.5)	18(36.7)
혼합	3(42.9)	2(28.6)	2(28.6)
치사	3(42.9)	2(28.6)	2(28.6)

주. 단위: 명(%)

거나, 아니면 중립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일 것이라는 생각의 비율은 낮았다. 즉, 피고인들은 배심원들이 판사에 비해서 더 공정하지는 않고, 특히 자신들(피고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 136명 중 64%인 87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36%인 49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들이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많았다. 실제 배심원 재판을 신청한 12명의 경우는 “부담스럽지 않다”(8명, 66.7%)가 “부담스럽다”(4명, 33.3%)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청주의 절차와 관련하여, “만약 귀하의 재판을 무효로 하고 다시 재판을 한다면 그 때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이라는 질문에 136명 중 53명(39%)이 “아니다”, 48명(35.3%)이 “그렇다”, 35명(25.7%)이 “잘 모르겠

다”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만약 국민참여재판이 기본이고 판사재판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판사재판을 신청하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136명 중 67명(50.4%)이 “아니다”, 66명(49.6%)이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다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인지의 질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비율은 낮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기본이라면 그냥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는 비율은 반수 정도였다. 즉, 국민참여재판이 기본이되더라도 현재보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피고인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신청기간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 결정하는 7일은 결정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었는지에 대해서 111명 중 60명(54.1%)이 “그렇다”, 51명(45.9%)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재판시간이 배심원과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134명 중 75명(56%)이 “그렇다”, 28명(20.9%)이 “아니다”, 31명(23.1%)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짧은 재판시간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75명을 기준으로, 짧은 재판시간은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검사에게”, 47명(65.3%), “피고인에게”, 10명(13.9%),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8명(11.1%), “양자 모두에게 유리함”은 7명(9.7%)이었다.

재판관여자에 대한 인식

재판에 관여된 사람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어떤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표 3). 판사의 태도에 대하여 130명 중 62명(47.7%)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 않은 “중립적” 태도, 59명(45.7%)은

“부정적” 태도를 가졌다고 응답하였고, 9명(6.9%)은 판사의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검사의 태도에 대해서, 132명 중 72명(54.5%)이 부정적 태도, 57명(43.2%)이 중립적 태도, 3명(2.3%)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호사의 경우는, 130명 중 85명(65.4%)이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중립적 태도, 33명(25.4%)이 부정적 태도, 12명(9.2%)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이었던 사람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빈도는 매우 낮았다.

변호사에게 재판형태(판사재판/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조언을 받은 적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76.6%(105명)이 조언을 받은 적이 없었고, 23.4%(32명)이 조언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와 변호사의 재판형태 권유를 교차분석 했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12명 중 7명(58.3%)은 권유를 받았고, 5명(41.7%)은 권유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124명 중 25명(20.2%)은 권유를

표 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재판관여자(판사, 검사, 변호사)의 태도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긍정적 빈도(%)	부정적 빈도(%)	중립적 빈도(%)	합계 빈도(%)
판사	9(6.9)	59(45.4)	62(47.7)	130(100)
검사	3(2.3)	72(54.5)	57(43.2)	132(100)
변호사	12(9.2)	33(25.4)	85(65.4)	130(100)

받았고, 99명(79.8%)은 권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혹은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지목된 것들을 조사연구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수용자들은 전체적으로, 재판 당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심지어는,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던, 몇 안 되는 피고인(13명) 중에는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알지 못한 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즉, 자신에게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정보와 지식)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판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 당시보다 현재 조사 시점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지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1/4의 수용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모른다고 느끼고 있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와 지식의 부재는 국민참여재판 도입의 초반기에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김창렬, 2014), 점차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의미, 내용, 성격,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널리 세밀하게 이해되고 알려져야 하고,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피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이 일차적 요건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신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참여재판을 선택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참여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최소한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형태의 재판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대다수의 수용자가 판사재판이 더 유리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은 배심원 요인과 관련하여 배심원들이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과 '주위의 만류'였고, '내게 불리한 면이 있다', '판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등이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몰라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에 대한 문제, 항소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견해가 많았다. 수용자들은 배심원들이 법에 대해서 현저히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판사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심원들이 법보다 감정을 우선시 여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범죄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비우호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특히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심적으로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본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수용자들이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부분인정, 41.5%, 전부인정, 52.1%).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그 죄의 구체적 내용이 일반인들 앞에서 자세히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람들은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는 것을 덜 부담스럽게 여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들 중에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판사의 태도와 검사의 태도가 부정적일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이 많았다(판사의 태도에 대해서 45.7%, 검사의 태도에 대해서 54.5%). 변호사의 태도가 부정적일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25.4%). 반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판사, 검사, 변호사의 태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의 비율은 공히 매우 적었다(차레대로, 6.9%, 2.3%, 8.4%). 따라서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재판형식을 피고인의 선택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즉,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재판관여자들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재판형태에 대한 피고인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문으로 조사하였을 때도 129명 중 23명(17.8%)이 판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검사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연구에서 검사에게 밋보일까봐 국민참여재판을 꺼린다는 내용과 일치한다(김용호, 2014). 재판관여자들이 싫어할 것으로 보이는 재판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나 검사가 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객관적으로

자료나 피고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소와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 항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 항소(쌍방 항소한 경우 포함)가 92.4% 이었고, 일반재판으로 진행된 피고인 항소율 87.2%보다 다소 더 높았다. 검사 항소의(쌍방 항소한 경우 포함)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 47.2%였고, 일반재판으로 진행된 경우 37.6%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 더 높은 항소율을 보였다. 기존연구(김범식, 2014, 김창렬, 2014)에서도 검사의 항소율이 일반재판보다 높은 것을 지적하였고, 국민참여재판의 항소율이 일반 판사재판보다 높은 항소율을 보인다고 하였다(박호현, 김중호, 명도현, 2015).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기타 의견에서 검사가 항소할 것이라는 이유가 있었으며, 기존 논문에서도 국민참여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방안(김범식, 2014, 박호현, 김중호, 명도현, 2015)이 논의된 바 있다.

만약 다시 재판을 받는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인지의 질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비율은 낮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기본이라면 그냥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는 비율은 반수 정도였다. 즉, 국민참여재판이 기본이 되더라도 현재보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7) 2008년~2013년까지 국민참여재판 항소율 판결 선고된 1,193건 중 미항소 218건(18.2%), 항소율 총 975건(81.7%)이다. 당사자별 항소율은 검사 535건 44.8%, 피고인 745건 62.6%였다. 동일한 기간 제1심 형사합의부사건의 전체 항소율 5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항소율을 나타냈고, 동일한 기간 피고인 제1심 합의부사건 항소율 48.9%에 비해 높고, 검사 항소는 동일한 기간 합의부사건 항소율 25.2%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피고인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실제 재판이 시작될 당시 피고인들은 재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나 충격에 의해서 주어진 여건을 따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정착된다면 피고인들의 선택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짧은 재판시간이 배심원과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134명 중 75명(56%)이 “그렇다”, 28명(20.9%)이 “아니다”, 31명(23.1%)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짧은 재판시간이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75명을 기준으로, 짧은 재판시간은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검사에게”, 47명(65.3%), “피고인에게”, 10명(13.9%),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다”, 8명(11.1%), “양자 모두에게 유리함”은 7명(9.7%)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여도 피고인에게보다는 검사에게 유리하므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변호사에게 재판형태(판사재판/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조언을 받은 적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76.6%(105명)이 조언을 받은 적이 없었고, 23.4%(32명)이 조언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의뢰인에게 참여재판을 권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들이 참여재판에 대하여 노력에 비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변호사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수용자들은 재판 당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느꼈고, 현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지수준이 증가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한 편이다. 국민참여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던 수용자

들도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이 판사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수용자들은 배심원들이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판사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배심원들이 법보다는 감정을 우선시 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은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수용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한 경우였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판사나 검사의 태도가 부정적일 것으로 추정하는 수용자들이 많았으며, 변호사에게서 재판형태를 조언 받은 적은 대부분이 없었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자들은 높은 항소율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이 판사재판에 비해서 피고인에게 더 유리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판사재판에 비해서 더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제도적 요소가 있어서도 안 된다. 배심원들의 이해능력과 편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판사의 태도 등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적 의견과 왜곡이 마스크 등을 통해 대중에 유포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피고인들이 배심원 평결은 기속력이 없어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사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검사의 항소에 의해 사실심이 반복되는 이심에서 어차피 판사재판으로 되돌아가므로 국민참여재판은 불확정의 시간만 연장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도적 요소들도 사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사법절차에 의해 조금이라도 억

울한 처우를 받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고, 사법절차에 의해 부당한 이익(예, 전관예우)을 얻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제도는 (1)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2) 사법절차의 반민주성과 불투명성에 의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기 어렵도록 정비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법학자들이 제시한 낮은 신청률의 원인을 실제 피고인들이었던 수용자들에게 설문조사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자였던 수용자들이 생각하는 국민 참여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기초연구이다. 심리학에서는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반면, 피고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설문지에 의한 자가 응답이었으므로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신들이 선택한 재판형태의 이유는 개인이나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좀 더 깊이 있는 사실은 심층면담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지역에 위치한 교도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인 편향이 존재할 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피의자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것과 자신들의 재판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충분히 숙고한 후 그 형태를 선택하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판과 관련된 판사, 검사, 변호사의 관심과 긍정적 인식이 필요한데 국민참여재판에 의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재판관련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심원들이 공정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활용하여,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기를 꺼려하는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범식 (2014). 국민참여재판 시행 6년의 경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6(2), 151-173.
- 김병수, 민영성 (2011).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23(1), 35-64.
- 김용호 (2014).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제언. 원광법학, 30(2), 143-176.
- 김창렬 (2014).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2(1), 197-227.
- 김태규 (2008).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9(4), 127-156.
- 김호겸, 박광섭 (2013).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2), 301-337.
- 박미숙 (2010).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형사정책연구, 21(2), 135-174.
- 박호현, 김종호, 명도현 (201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22(4), 327-352.
- 법원 행정처 (2007).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서울: 법원행정처

- 법원 행정처 (2010).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서울: 법원행정처
- 신동운 (2006). 한국 형사사법의 개혁과 전망. 한국비교형사법연구, 8(1), 1-30.
- 심희기 (2001). 1990년대 한국의 형사사법개혁 운동의 상고와 전망: 권위주의의 해체와 시민참여운동의 태동. 형사정책, 13(1), 355-373.
- 이금옥 (2008).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9(4), 135-160.
- 이동희 (2015).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최종 형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포함하여. 저스티스, 143(3), 69-97.
- 이인석 (2010).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양형. 국민의 사법참여연구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 점승현 (2014).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30(1), 143-172.
- 한상훈 (2008).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정착방안. 저스티스, 106, 483-534.
- 한성훈 (201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9(2), 47-70.
- 한성훈 (2014).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7(3), 199-231.
- 1차 원고접수 : 2017. 1. 19.
심사통과접수 : 2017. 2. 17.
최종원고접수 : 2017. 2. 24.

Choosing And Avoiding To Be Tried By Jury: A Survey With Prison Inmates

Jinseop Shim

Danee Lee

Kwangbai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fter 5 years of evaluation and revisions of the law, jury trials are currently in operation hoping to establish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by enforc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creating understanding of the judicial process. Problems within the jury trials have been discussed among legal experts who are also seeking new ways to operate in a new trial system. A low application rate by defendants is certainly one of the issues frequently brought up in their discussions, which legal experts believe that systematic studies are essential to understand low application rates by defendants. In the pursuit to identify the cause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42 inmates who were previously eligible for the trial by jury. It was found that the defendants themselves tended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jury trial. They also believed that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also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jury trials. The inmates suspected that emotion, rather than reason, would be the critical determinant of jurors' judgmen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vitalizing the jury trials in Korea were discussed.

Key words : Lay participation, Democracy, Transparency, Criminal Defendant, Application Rate, Inmates, Attitude Toward Jury Trial